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동향

[2022년 1분기]

2022. 3.

본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국내 환경정책·동향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KOTRA 종합행정지원센터 투자종합상담실 환경부 과견관(02-3497-1738, hjko1003@kotra.or.kr)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 차



I. 주요 정책	1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1
2.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제표준 일치화	5
3. 2022년 무공해차 보급 정책방향 발표	7
II. 규제 개선	10
1. 중복규제 생활화학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유예	10
2.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12
3.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기준 마련	14
4. 고품질 재활용기준 마련 및 재활용 우수 포장재 확대	15
III. 산업계 지원	18
1. 기업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및 환경책임투자지원시스템 구축	18
2. 중소기업 화학안전시설 개선비용 지원	24
3.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 탄소중립설비 지원	25
4.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신설	28

I. 주요 정책

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3월 25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법률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3월 25일부터 시행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 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3월 25일 시행되었다.
- 본 법에서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감축·적응시책, 정의로운 전환시책,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정책목표 달성 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다.
-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22.9.25), 기후위기 대응 재원 확보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운용(‘22.1.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등 국가 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 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 탄소중립으로의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계층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으로 사회 전 부문에서 탄소 중립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 ◆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 ◆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용(‘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붙임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 주요내용

총괄

- (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형식)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부칙 제2조)
- (체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비전·목표·이행체계 및 시책 규정
 - (총괄) 2050 탄소중립 및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등
 - (4대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 기후대응 기금 신설

<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

총괄	(비전) 2050 탄소중립 + 환경·경제 조화			
	(전략·목표)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체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시도·시군구)			
분야별 시책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 기후변화영향평가 · 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 · 배출권·목표관리 · 탄소중립 도시 · 지역 에너지 전환 · 녹색건축·교통 · 흡수원·CCUS · 국제 감축사업 · 종합정보관리	· 감시·예측 ·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가, 지방, 공공기관) · 지역 기후위기대응 · 물 관리 · 녹색국토 · 농림수산 전환 · 적응센터	· 사회안전망 · 특별지구 · 사업전환 · 자산손실 최소화 · 국민참여 · 협동조합 활성화 · 지원센터	· 녹색경제 · 녹색산업 · 녹색경영 · 녹색기술 · 조세제도 · 녹색금융 · 정보통신 · 순환경제
기반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확산(지자체, 생산·소비, 녹색생활,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기후대응 기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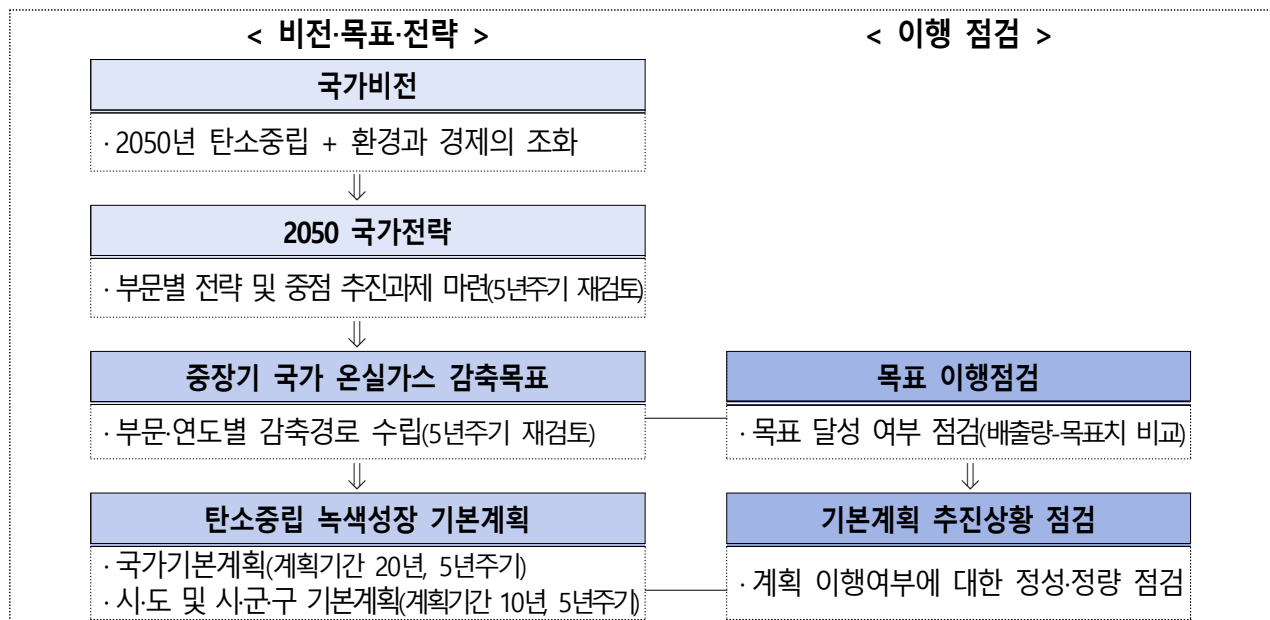
1 비전 · 전략 · 이행체계

- (비전·전략·목표)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 환경과 경제의 조화) → 국가전략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부문별·연도별 목표로 체계화

*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 (계획) 국가비전과 NDC 달성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계획 수립

- (이행점검) 중·장기 목표 달성 여부 +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병행



2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 (위원구성) 50명 이상 100명 이내(간사위원 국무조정실장)
- (사무처) 위원회 소속 사무처 설치(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
- (지방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 (기능) 탄소중립 관련 정책, 목표 수립 및 이행점검 등 심의·의결

* (심의·의결) △정책 기본방향 △비전·목표 설정 △국가전략 수립 △이행점검·피드백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변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점검
 △기타 법·제도, 자원배분, 연구개발,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③ 온실가스 감축 시책

- (기후변화영향평가) 사업·정책 환경영향평가 시 **기후변화 영향** 추가 검토
 - * 온실가스 다량 배출하는 등의 계획·사업으로 10개 분야 83개 사업 선정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예산·기금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목표 설정, 결산 과정에서 평가·피드백(동 법에 원칙만 규정,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
- (국제 감축사업)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감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
- (기타) 녹색건축물·교통, 지역 에너지 전환, CCUS 및 탄소흡수원 증진 등

④ 기후위기 적응·정의로운 전환·녹색성장

-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 예측 및 취약성 평가 강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지원 등
- (정의로운 전환) 급격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실업 피해 지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 등
- (녹색성장) 사회·경제 전반 녹색전환을 담은 **11개*** 분야별 정책방향 규정
 - * ▲녹색경제·녹색산업, ▲녹색경영, ▲녹색기술, ▲조세제도, ▲금융지원, ▲녹색기술산업 특례, ▲표준화 및 인증,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 ▲순환경제

⑤ 기후대응기금

- 기후위기 대응 기반 조성 및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한 기금 조성·운용
 - * (재원) ▲정부출연금 ▲타회계·기금 전입금, ▲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 등 (용도) ▲온실가스 감축, ▲산업구조 전환, ▲취약지역·계층 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⑥ 부 칙

- (시행일) 법 공포 **6개월** 후 시행('22.3.25)
 - * (예외) ▲기후대응기금 : '22.1.1 시행, ▲기후변화영향평가 : 공포 후 1년 후 시행('22.9.25)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탄소중립 지원센터 : '22.7.1 시행
- (타 법률 폐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폐지
 - * 종전 법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적응대책은 이 법에 따른 계획·대책 수립 전까지 효력 유지

- ▶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업계의 사업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한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 ▶ 표준업무분야 정부-민간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정보서인 「환경분야 KS-ISO 표준 업무편람」 발간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을 완료하였다.

* 환경분야 국가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2015년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표준대응체계

○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 시켰으며,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standard.go.kr)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대기환경 분야 6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9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8종 △생활소음 분야 16종 △유량 분야 11종
△제품환경성 분야 11종 △실내공기질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5종

□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환경분야 케이에스·아이에스오(KS·ISO) 업무편람'을 2월 10일부터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공유**하였다.

*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65개국이 속해 있으며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임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ecolibrary.me.go.kr/nier)에서 내려받아 활용가능

붙임 : 환경분야 표준 운영현황

(2022.02.)

ISO 분야	SC	SC 명	WG 수	표준수	개발중	관련 KS
		총계				
			131	909	156	600
음향 TC43	WG	음향	4	26	5	76
	SC 1	소음	21	130	30	
		계	25	156	35	76
교통 TC70		WG	0	0	0	24
	SC 8	배기가스배출측정	1	10	2	
		계	1	10	2	24
유량측정 TC 113	SC 1	유속면적법	5	12	2	31
	SC 2	유량 측정 구조물	2	17	2	
	SC 5	기기, 장비 및 데이터 관리	3	11	3	
	SC 6	퇴적물 이동	1	11	1	
	SC 8	지하수	0	6	0	2
		WG	5	8	5	
		계	16	65	13	33
대기 TC146	SC 1	고정배출원	3	38	8	24
	SC 3	환경대기	2	27	1	21
	SC 4	일반	3	12	0	12
	SC 6	실내공기질	10	50	9	34
		계	18	127	18	91
수질 TC147	SC 1	용어	0	12	1	200
	SC 2	물리·화학·생물학적 방법	14	160	14	
	SC 3	방사능 측정	5	26	16	4
	SC 4	미생물학적 방법	3	29	1	18
	SC 5	생물	6	78	3	
	SC 6	시료채취(일반)	4	22	3	
		WG	1	2	0	
		계	33	329	38	222
토양 TC190	SC 3	화학적 방법과 토양 특성	4	87	8	99
	SC 4	생물학적 방법	6	53	8	
	SC 7	토양과 지점 평가	4	38	3	
		WG	3	13	3	
		계	17	191	22	99
상하수도 TC224	WG	상하수도 서비스	10	19	9	3
		계	0	0	0	41
포장 TC122	SC 4	포장과 환경	2	9	2	10
		계	0	0	0	41
폐기물 TC297	WG	폐기물 관리	2	0	4	1
		계	0	0	0	41
고형연료 TC300	WG	고형 연료	7	3	13	0
		계	0	0	0	41
제품 환경성	-	제품환경성	-	-	-	41
		계	-	-	-	41

※ TC: technical committee(기술위원회), SC: sub-committee(분과위원회), WG: working group(작업반)

- ▶ 2022년 전기차 20만 7,500대, 수소차 2만 8,000대 보급으로 신규 판매차량 중 10% 이상 무공해차 보급 계획(전년 대비 2배 이상)
- ▶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연계한 지역별 대표사업 추진

- 환경부는 2022년 말까지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총 10.9만대로 전체 신규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으며, 누적 보급 대수는 25.7만 대를 달성했다.

< 국내 무공해차 보급 현황 (21.12.31. 기준) >

(단위: 대)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누적
계	56,751	39,274	52,556	108,959	257,540*
전기차	55,843	35,080	46,713	100,427	238,063
수소차	908	4,194	5,843	8,532	19,477

* 전체 차량 2,491만대 중 1%

- 특히,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2020년도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증가하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148만 대) 중 비율 역시 2020년도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 수소차는 2020년도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약 46% 증가했으며, 보급 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다.
- ※ ('21.1월~9월 판매기준) 한국: 6,420대, 미국: 2,743대, 일본: 2,168대

-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누적 5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 고성능(연비·주행거리)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 광역버스·수소청소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단가를 반영했으며, 수소충전소 구축지역을 대상으로 상용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2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조)

- 아울러, 충전환경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충전기 구축은 지역별 무공해차 보급과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 지역별 대표 전기충전기 구축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단독주택, 도·농 지역 등 취약지역에 충전기 설치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 수소충전소는 전략적 배치계획에 따라 전국 누적 310기 이상을 균형있게 확충할 계획이다.

붙임 : '21년 대비 '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21년 대비 ‘22년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

구 분	‘21년	‘22년(안)
승 용	- 연비보조금(42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5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5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700만원) * 제도 대상(20만원), ‘20년 보급목표 달성률(30만원) (100%~110% 10만원, 111%~150% 20만원, 151%~ 3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300km 이상 : 70~75% 미만 20만원, 75~80% 미만 30만원, 80% 이상 50만원, 400km 이상 : 65~70% 미만 20만원, 70~75% 미만 30만원, 75% 이상 50만원)	- 연비보조금(360만원×연비계수) + 주행거리 보조금(240만원×주행거리계수) + 이행보조금(70만원) +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지원액 600만원) * 제도 대상(30만원), ‘21년 보급목표 달성여부(40만원) (무공해목표 달성 20만원, 저공해목표 달성 20만원) ** 상온 대비 저온 1회충전주행거리 비율 기준 (300km 미만 : 75% 이상 10만원, 80% 이상 20만원, 300km 이상 : 70% 이상 10만원, 75% 이상 20만원, 80% 이상 30만원, 400km 이상 : 70% 이상 20만원, 75% 이상 30만원)
	· < 신 규 >	- 인하인센티브, 기본가격 5.5천만원 미만 차량 대상 전년도 대비 가격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인하인센티브, 이행보조금, 에너지효율보조금 포함한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 초과 불가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6천만원 미만(100%),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5.5천만원 미만(100%), 5.5~8.5천만원 미만(50%), 8.5천만원 이상(0%)
	· < 신 규 >	- 법인·기관 지원시 지방비 50%만 지급 * 택시, 소상공인 제외
	· < 신 규 >	· 10%를 택시 물량으로 별도 배정
승 합	- 최대보조금 규모 - 대형 80백만원, 중형 60백만원	- 최대보조금 규모 - 대형 70백만원, 중형 50백만원
	· < 신 규 >	·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시 우선순위 부여, 국비 500만원 추가 지원
화 물	· 소형 1,600만원 정액 지급	· 소형, 성능(연비, 주행거리) 고려하여 차등, 최대 1,400만원
	· < 신 규 >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승용 既시행중
	· < 신 규 >	· 법인·기관 물량 별도 배정·집행(20%)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3/4분기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화물 중소기업 생산물량은 9월부터 집행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집행
초소형	· < 신 규 >	· 초소형 승용·화물차, 도심내 영업용 활용 확대를 위한 사업용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공 통	· < 신 규 >	· 최소 2회 이상 공고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법인·기관의 차량 구매 신청이 있는 경우 K-EV100 참여 업체,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대상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야 함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 지자체 거주요건 최대 3개월 내, 계산 기준일을 구매신청서 접수일로 통일
	· < 신 규 >	· ‘배터리 필수정보 제출’을 보급사업 참여 자격조건으로 설정

Ⅱ. 규제 개선

1

중복규제 생활화학제품에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유예 (2월 14일 시행)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제품을 단순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등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미이행에 따른 행정 처분을 2월 14일부터 유예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개선명령,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2월 14일부터 당분간 유예한다.
- 현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중복규제해소를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이 국회에서 진행중인 것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조치로서 법령 개정 시행 이전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다.
- 이번 조치는 소포장 완제품 형태로 취급 과정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마트, 약국, 택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 적용을 유예한다.
- * ①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② 운반차량, ③ 용기·포장, ④ 취급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의무
- 다만 철저한 화학사고 예방 관리가 필요한 고농도 원료 취급 제조사업장 등은 여전히 ‘화학물질관리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붙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제품의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주요 내용

- (현황)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등의 주성분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생활화학제품 등을 단순 보관·판매하는 마트·약국·택배업체 등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 적용
- (개선내용)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우선 적용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승인 받은 살생물제품** (다만, 생활화학제품*** 취급에 한정)에 대한 화관법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그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취급기준, 취급시설기준, 개인보호장구착용, 영업허가 등의 의무는 화관법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법 개정이 필요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표시 의무는 여전히 존재, 법 개정 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조치

<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적용기준 >

적용기준(조문)	주요 내용
통계조사(§12)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kg이상 취급하는 모든 업종의 사업장은 2년마다 취급현황, 취급시설 현황 등 자료 제출
취급기준 준수(§13)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의 혼합 보관·저장 금지,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참여,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14)	실내 취급, 하역·적재 시 등 착용 의무 부여
취급시설 기준(§24)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시설에 대해, 설치·관리 기준 적용 및 주기적인 검사·안전진단 시행 의무
영업허가(§28)	영업허가 대상은 취급시설 검사 및 예방관리계획서 제출, 관리자 등 기술인력 선임 및 안전 교육 이수 후 영업허가 취득 필요
유해화학물질 취급 표시(§16)	① 보관·저장시설 및 진열·보관장소, ② 운반차량, ③ 용기·포장, ④ 취급 사업장에 표시 필요

3월 16일부터 1톤 미만 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을 허용하고, 0.1톤 미만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면제 확인 요건을 완화

- 환경부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이번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 이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 16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 첫째, 연간 제조 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낮은 물질은 수생환경에서 급성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적고, 사용과정에서 소멸 또는 회수·재사용되는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의 물질은 환경 유해성에 대한 시험자료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등 2개 시험자료
- 둘째,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 * 성분정보를 알수 없는 물질의 연간 총 수입량의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로 한정

붙임 : 제도개선 후 달라지는 내용

-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제도개선 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현행

□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간소화

-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9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물리·화학적 특성	① 물질의 상태, ② 물용해도, ③ 녹는점/어는점, ④ 끓는점, ⑤ 증기압
인체 유해성	⑥ 급성경구독성(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 ⑦ 복귀돌연변이
환경 유해성	⑧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⑨ 이분해성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요건 완화

- 등록·신고면제 신청시 물질명, 고유번호를 필수로 작성

【 제 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후(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용도 자료보호신청 여부 ④ 연건폐지(수입) 예정량(톤) ⑥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① 상품명 ③ 수입(수출)국 [] 해당 [] 해당없음 ⑤ 급회 제조(수입)량(톤)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 번호 ⑩ 대표 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 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귀하

제도개선 후

□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 간소화

-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시 7개 시험자료 제출 의무*

물리·화학적 특성	① 물질의 상태, ② 물용해도, ③ 녹는점/어는점, ④ 끓는점, ⑤ 증기압
인체 유해성	⑥ 급성경구독성(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급성흡입독성), ⑦ 복귀돌연변이
환경 유해성	⑧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 생략 가능
유해성	⑨ 이분해성 → 생략 가능

- * 단, 물용해도가 1mg/L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해당 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신고면제 요건 완화

- 등록·신고면제 신청시 물질명, 고유번호 생략* 가능

- * 단,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외제조·생산자가 상세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제 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서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은 후(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용도 자료보호신청 여부 ④ 연건폐지(수입) 예정량(톤) ⑥ 등록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① 상품명 ③ 수입(수출)국 [] 해당 [] 해당없음 ⑤ 급회 제조(수입)량(톤)	생략 가능 생략 가능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 번호 ⑩ 대표 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 조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 귀하

페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로 제조한 열분해유가 원유를 대체하여 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환경부는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 시설 및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3월 4일 입법예고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페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로 페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가 필요하여 페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추가했다.

* 전년 대비 플라스틱류 발생량 18.9% 증가, 비닐류 발생량 9% 증가(20년 기준)

- 또한, 열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개질(改質)·추출하여 연료전지, 수소차 충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재활용 가능 유형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 기존에 소각시설로 규정된 열분해시설은 재활용시설로 변경하여 열분해유 회수기준을 투입된 페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열분해시설 특성에 맞는 설치·관리기준도 제시했다.

<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열분해 시설 분류 개편	- (현행) 소각시설로 분류 → (개정) 재활용시설로 분류 [별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열분해 재활용시설 기준 마련	- (신설) 열분해 시설 설치·관리기준, 시설사용 신고 의무 및 검사기준 마련 [제41조, 별표 9·10·11]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정비	- (현행) 연료 제조만 규정 → (개정) 석유·석유화학 제품, 수소 등 원료 제조 추가 및 세부기준 마련 [별표 4의2·3, 5의3]

- ▶ 투명페트병을 물리적인 가공과정을 거쳐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기준 마련
- ▶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기준 조정으로 '단일재질' 포장재 사용 유도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 등을 담은 '식품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하여 2월 24일 고시하고, 이날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하였다.
-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에 따르면,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파쇄·분쇄 및 광학선별 시설 등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재생원료를 생산할 때 투입되는 원료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운반한 후,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선별업체가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투명페트병만을 사용해야 한다.
 - 아울러,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생원료는 △라벨 등 이물질,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등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또한,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2중 검증체제를 마련하였다.

<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 >



- 그간 국내에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 부산물로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편 시행으로 해외처럼 물리적인 재활용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재활용 우수 '단일재질' 포장재 확대 및 사용 유도]

-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 고시)' 개정안을 2월 28일부터 시행하였다.

* 식품 등의 재료를 담기 위해 쟁반이나 접시 등 그릇 모양으로 만든 플라스틱 용기

**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 ('19년 도입)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는 표기의무 및 품목별로 10~20% 재활용 분담금 할증

- 그간 합성수지와 금속 재질이 부착된 복합재질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만들던 일부 화장품 용기, 음료수 포장에 쓰이는 밀봉(캔시머) 용기, 식품 포장에 쓰이는 합성수지와 알루미늄 재질이 복합된 용기 및 쟁반(트레이)류 포장재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된다.

- 한편, 이미 포장재·재질 구조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질·구조 등급이 변경되는 포장재를 제조(수입 포함)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올해 9월 30일까지 제출하고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포장재 이용 제품의 판매업자

- 아울러, 소비자들은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와는 별개로 해당 제품에 표시된 분리배출표시를 기준으로 분리 배출하되, 도포·접합 표시(必)가 붙은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

붙임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주요 개정사항

① 공통

- '분리 불가능'한 경우에 몸체로부터 라벨, 마개 및 잡자재를 별도 도구 사용없이 분리하더라도 그 일부가 남아있는 경우를 포함

② 페트병

-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 별도 배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활용 어려움' 판정 제외

③ 합성수지 포장재*

* 합성수지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 합성수지 포장재의 재질·구조 세부 분류기준 조정

현 행	개 정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 트레이류 포장재	8.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
9.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포장재	9. 합성수지 필름·시트류 포장재

-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의 범위를 '재활용 우수' 이하에서 '재활용 보통' 이하로 조정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복합되어, 합성수지와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재활용 어려움'

- 합성수지 용기는 합성수지 이외 재질의 리드·마개 및 빨대 사용시 몸체 재질에 관계없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판정

* (기존) PET외 단일재질에만 적용 → (개선) 모든 단일·복합재질 용기에 적용

< 새롭게 '재활용 어려움'이 되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예시 >

 합성수지 몸체 + 금속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몸체 + 알루미늄 테두리 복합구조	 페트, 폴리프로필렌 알루미늄 복합구조	 합성수지 + 알루미늄 50μm 초과 사용한 보냉백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복합재질 필름·시트류

Ⅲ. 산업계 지원

1

기업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 시스템 구축

기업의 환경경영 및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환경성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축(2월 18일)

□ 배경

- 2020년 8월, 환경부는 금융위원회와 녹색금융 TF를 발족하여 녹색금융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가겠다고 발표하였으며,
- 2021년 4월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 수립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투자 의사결정에서 환경적 요소를 반영하는 투자를 '환경책임투자'라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성 평가체계”는 이러한 큰 틀 아래에서 개발되었다.

□ 환경성 평가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 환경성 평가체계는 환경성*이 우수한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기업이 자가 진단을 통해 환경성 개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 환경성(E)은 기업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대비 자원, 에너지 소비,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 환경성 평가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산업별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업종을 재분류하고, 환경부가 관리 중인 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은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로 구성된 4가지 분야의 정량평가를 통해 기본부문(100점)을 구성하고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 환경관계법규 위반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감점 부문(±10점)을 구성했다.

<환경성 평가체계 구성>

구 분		세부내용	
기본 부문 (100점)	온실가스 (25점)	·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감축 성과(3), 산업 내 성과(2), 산업리스크(1)를 가중평균한 값
	대기오염 (25점)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원단위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총먼지)	
	수자원 (25점)	· 용수사용량 원단위	
	폐기물 (25점)	· 폐기물 배출량 원단위 (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가·감점 부문 (±10점)	가점지표(+10점)	· 환경인증실적	
	감점지표(-10점)	· 환경관계법규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 환경부는 환경성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환경성 평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환경경영 개선을 뒷받침할 예정이며,
- 이번에 마련된 환경성 평가체계를 비롯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 정보공개제도 등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개시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책임투자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책임 투자 종합플랫폼(www.gmi.go.kr)’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개시했다.
- 종합플랫폼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환경성 평가체계 등 환경책임 투자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녹색채권 사후보고*, 기업의 환경성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기업, 금융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녹색채권 사후보고) 사업계획(프로젝트)의 종류 및 배출계수 등을 입력하면 녹색채권의 환경개선 효과를 산정해주는 산정도구 10종을 제공

** (기업 환경성평가 및 자가진단 서비스)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매출액 및 배출량 정보 등을 입력하면 환경성 평가결과 및 취약 부문을 한눈에 확인

붙임 1. 환경성 평가체계 주요내용

붙임 2.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 추진배경

- 국내에서는 평가기관별 상이한 ESG 평가 기준에 대한 혼란, 중소기업의 ESG 대응 어려움 등 ESG를 “평가·규제” 문제로 인식
- 단편적인 “평가 대응”을 넘어, 기업과 금융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ESG 평가에 대한 장기적·정책적 접근 필요
- 데이터 기반 신뢰성 높은 평가체계와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으로 환경책임투자과 기업 환경개선 노력 정착 유도

□ 구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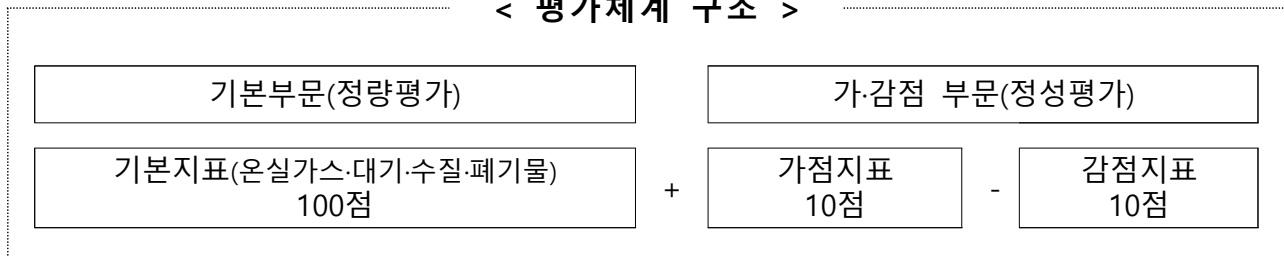
- 환경정보공개제도 등과 연계, 환경부가 실제 수집한 정량 데이터 중심 평가지표를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 시장의 자율적 역할 지원, 활용도 높은 평가지표 구성
 - 평가지표, 산식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 다양한 기관이 필요와 목적에 맞게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

□ 평가 및 분석 대상

- (분석대상) 국내기업 82,432개 사, 2016년~2019년간 4개년 정보
 - ※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용수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중 1개 이상 데이터가 있는 기업은 분석 대상에 포함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를 바탕으로 산업별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성, 업종별 유사성 등을 반영하여 25개 산업군*으로 분류
 - * 제조 12개 업종, 비제조 13개 업종으로 구성
-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K-Means Clustering을 통해 매체별 오염물질 배출량 유사성에 따라 군집분석 후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통해 산업분류
 - ※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시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WEMS),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 활용

□ 평가체계 주요내용

< 평가체계 구조 >



① 기본부문



○ (평가 분야) 온실가스, 대기오염, 수자원, 폐기물 분야 정량평가

* 국가 환경DB 활용하되, DB 정보가 한 분야라도 있는 기업은 평가 대상에 포함

(예시 : 올바로시스템 등 폐기물 정보만 있는 기업은 폐기물 분야 평가점수로 기본부문 점수 도출)

-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 (대기오염) 황산화물, 질산화물 및 총먼지 배출량
- (수자원) 용수사용량
- (폐기물) 일반, 지정 및 건설폐기물 배출량

○ (분야별 점수) 세부 분야별 배출량 원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①감축성과, ②산업 내 성과, ③산업리스크를 ④3:2:1로 가중평균하여 점수 산출

* 배출량(사용량)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기업 규모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기업 경제활동 규모 당 발생하는 환경부하 수준을 평가

※ (세부지표별 점수산정) 오염물질 배출량, 용수사용량 등 값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하고, 상한값 및 하한값 사이를 10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10점 단위로 점수 산정(10점~100점)

①(감축성과) 기업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여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 유도

산출방법 : 당해연도 해당기업 배출량 원단위 ÷ 직전 3개년 해당기업 평균 배출량 원단위

- ②(산업 내 성과) 동일산업 내에서 기업의 당해연도 배출량 원단위를 상대 평가하여 동종업계 대비 기업의 환경관리 성과 평가

산출방법 : 당해연도 해당기업 배출량 ÷ 당해연도 해당기업 매출액

- ③(산업리스크) 국가 전체에서 해당 산업이 미치는 환경부하를 평가하여 해당 산업이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산출방법 : 해당산업 총 배출량 ÷ 해당산업 총 기업수

(예시) 온실가스 분야 산업리스크 : 철강 20점, 석유정제 10점, 금융보험업 70점, 숙박·음식점 80점

- ④(가중치 부여) 기업의 감축 노력과 직접 관련될수록 더 큰 가중치를 부여 하여 가중평균, 분야별 점수 도출(감축지표 x3, 산업내 성과 x2, 산업리스크 x1)

※ 본 평가체계 활용 시 평가기관, 금융기관 등 기관별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자율적 변경 가능

- (기본부문 점수) 온실가스, 대기, 수질, 폐기물 4개 세부 분야별 점수를 산술평균 하여 기본부문 점수 산정(100점 만점)

② 가·감점 부문

- (가점지표) 기업이 취득한 환경 분야 인증실적에 따라 가점(+10점)
 ※ 환경신기술 검증(2), 환경신기술 인증·환경경영시스템·저탄소제품·환경표지인증(1.5), 녹색GR인증(1)
- (감점지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여 평가연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및 경중에 따라 감점(-10점)
 ※ 경고·개선명령·과태료(-1~-4), 이행명령·조업정지·과징금(-3~-10), 사용중지·폐쇄명령·허가취소(-7~-10)

□ 활용방안

- (금융기관) 기존 녹색경영금융시스템(enVinance)을 발전시켜 제공, 평가 우수기업 금리우대상품, 지수상품펀드 등 환경책임투자 금융상품 개발
- (ESG 평가기관) 평가기관에 평가방법론, 데이터 분석 의의 등을 제공 하여 민간기관의 환경성 평가 수준 제고
- (기업) 개별기업에 지표별·산업별 점수체계를 제공, 자신이 속한 위치를 파악하여 리스크 분야 파악, 대응책 마련 등 환경경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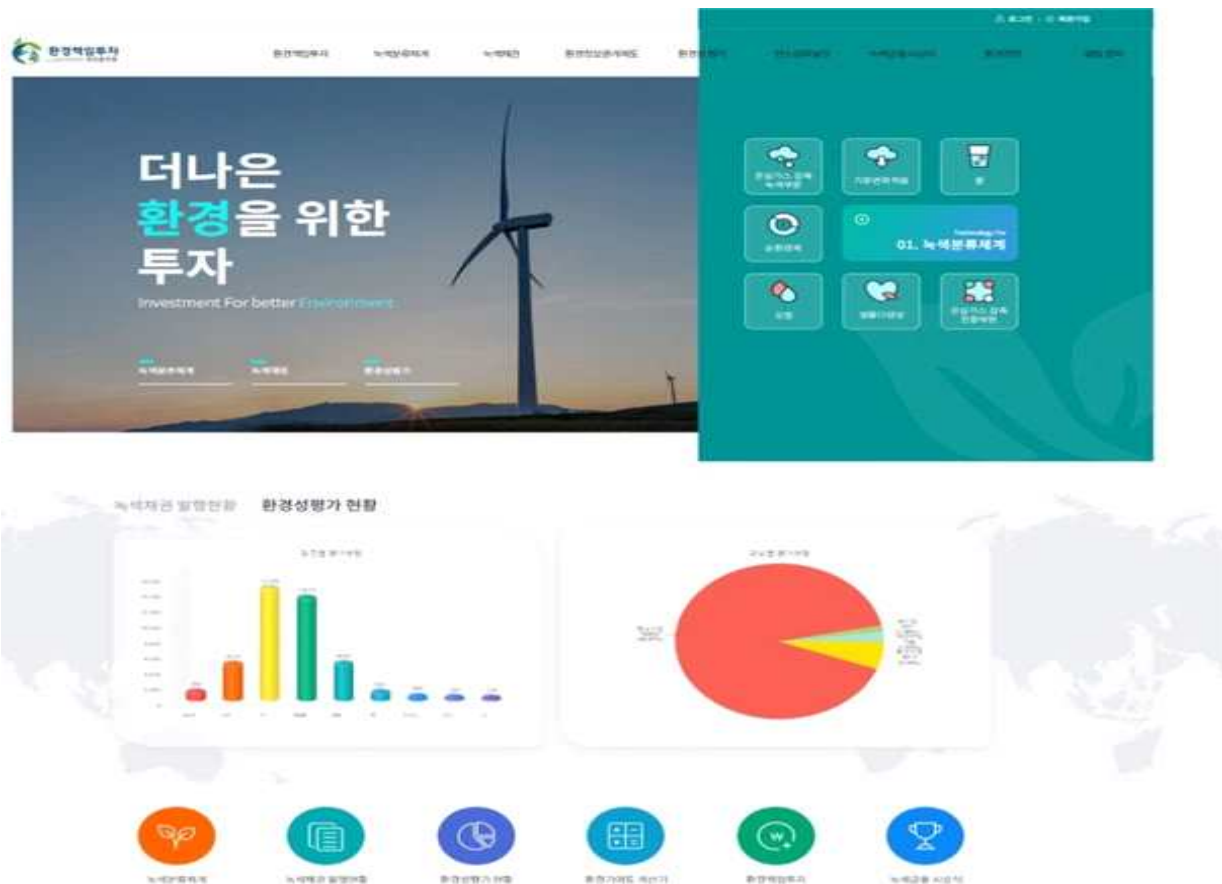
붙임2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구성도

□ 종합플랫폼 구성도

환경책임투자	녹색 분류체계	녹색채권	환경정보공개제도	환경성평가
환경책임투자 소개	분류체계소개	녹색채권소개	정보공개 제도 소개	환경성평가 소개
환경책임투자필요성	적용대상	녹색채권 발행현황	기업·기관 환경정보	평가산식
국내정책추진방향	녹색채권 관리체계와의 관계	기여도 계산기	환경정보소개	평가현황
추진사업소개		해외 녹색채권 관련기준 가이드라인	기타자료	지원현황
			국내외환경정보 공개현황	
			알림/참여	
탄소감축실천	녹색금융시상식	환경경영	공지사항	국제협력네트워크
생활속 실천사례	시상식소개	환경기업컨설팅	동향뉴스	커뮤니티
정책방향 (K-RE100 등)	수상분야 및 기준	녹색기업	세미나/강연소식	관심메뉴
	수상기업 소개	환경경영트렌드	각종 보고서	

□ 종합플랫폼 메인페이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시설개선비용의 70%)를 지원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

- 환경부는 올해부터 노후화된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화학 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예: 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 비용이나 노후화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 올해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80억 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되며, 사업장 1곳당 평균 2,700만 원이 지원될 경우 270여 개 곳의 사업장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본 지원사업은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재산 및 환경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지원을 통해 조속한 정비 유도 및 화학사고 예방
- **(지원우선순위)** ① 영세성(근로자 수 및 매출액 고려), ② 노후도(운영년수) 및 시급성(현장확인)
- **(지원항목)** ① 취급시설 개선항목(방류벽, 트렌치, CCTV, 누액감지기, 저장탱크 및 밸브교체 등)
② 취급 관리항목(지반침하계, 개인보호구 등)
- **(시행주체)** 한국환경공단(법정민간 위탁수행)
- **(사업절차)** ①신청(업체)·접수(공단) → ②지원대상자 선정(업체 방문 및 예상 지원비용 산정; 공단) → ③ 시설개선(업체) → ④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공단)

-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총 979억원 규모의 탄소 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 ▶ 신재생에너지설비, 공정설비, 연료전환 등 감축설비 지원 및 중소기업 보조율 상향(50→70%)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 대상으로 올해 1월 7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979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부터 지난 7년간(2015~2021년) 104개 업체의 144개 사업에 총 325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최근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사업 예산을 2021년 (222억 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879억 원,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100억 원
- 배출권 할당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할당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생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했다.
-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는 공모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e나라도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효과 등에 대한 종합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 * 사업공고문 등 세부사항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및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붙임 1.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개요

붙임 2.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 (사업개요)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 (추진근거) 배출권거래법 제35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 ☐ ('22년 예산) 총 979억원 (민간보조 904억원, 지자체보조 75억원)
- '21년 대비 341% 증액 편성(222→979억원), 중소기업 보조율을 50%→70%로 상향, 청정연료 전환·상생프로그램 등 사업 다변화

<2022년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억원)

구 분	'21년 예산	'22년 예산	보조율
계(①+②)	222	979	-
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222	879	-
• 민간보조	147	804	50~70%
- 중소·중견기업	147	704	중소 70%, 중견 50%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	100	50%
• 지자체보조	75	75	50%
②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	100	50%

- ☐ (운영체계) 환경부 총괄, 한국환경공단 위탁·수행
- ☐ (추진일정) 민간보조사업은 '22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자체보조사업은 '21년에 신청을 받아 선정 완료
- ☐ (지원설비) 재생에너지설비, 폐열회수이용설비, 탄소포집설비, 연료전환설비, 인버터, 차압터빈, 공기압축기, 고효율기, 폐기물전처리장치 등
- ☐ (그간 지원실적) '15년부터 7년간('15~'21년) 104개 업체(144개 사업)에 총 325억원 지원
- 설비설치를 통해 연간 약 11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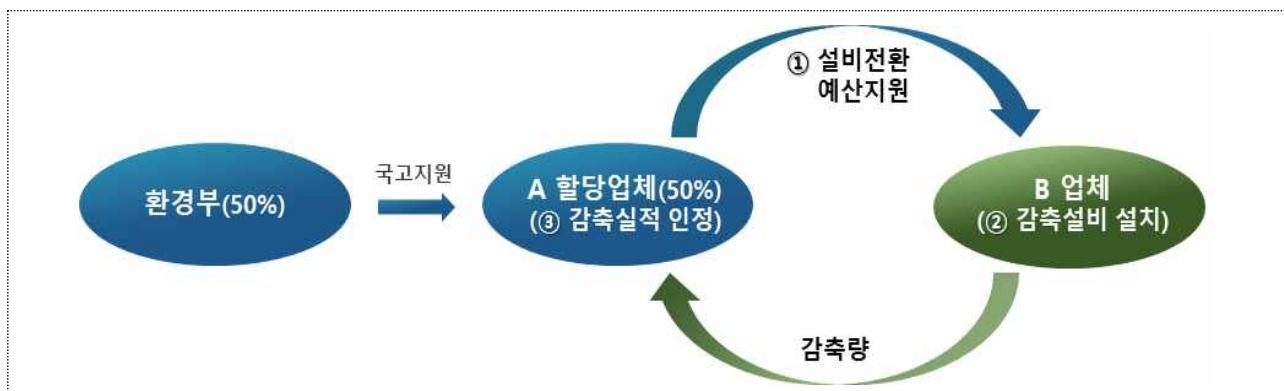
□ 추진배경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국가 감축목표(NDC) 상향, EU 탄소국경세(CBAM) 도입 및 RE100 확대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할당업체 본격 감축 필요
- 이미 설비 고도화가 진행된 일부 할당업체는 조직경계 내 추가감축이 곤란함에 따라, 업체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감축프로그램 마련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개요)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업체(대기업 포함)가 다른 중소·중견기업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
- (절차) ①A할당업체가 B업체(중소·중견업체)의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국고 50%+A업체 50%) → ②B업체 감축설비 설치 → ③B업체의 감축량을 A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 추진
 -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차기 계획기간 할당량 할당시 A업체 할당 기준의 내부감축실적*으로 인정
- * 감축실적(A업체)은 감축량(B업체)이 CDM, 외부사업 등의 방법론에 부합하는 경우 인정
- (효과) A업체는 B업체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실적 인정, B업체는 자부담 없이 설비전환 및 감축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체계도 >



환경부는 산업계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5조5백억원 규모의 장기,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친환경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활성화)을 추진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대출이자 지원)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공정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출시 이자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 하며,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지원원칙*에 따라 설정한다.

- * ①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를 상향(정부부담비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② 기업의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검증기관에서 확인하여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하며, 참여은행은 이를 반영하여 우대금리와 대출 상한금액 결정
- ③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상환 완료 시점까지 융자지원 대상물(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물)을 유지해야 함

※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의 사업공고문, 안내서 참조

□ 친환경설비투자(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융자지원 신설

- 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설비를 개선 하도록 정부예산을 원금으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지원한다.
- 올해 예산은 총 500억 원이며, 사업장은 8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 매 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에 연동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22년 1분기 1.82%)

※ 신청·접수는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진행

붙임 1.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융자지원 사업 개요

붙임 2.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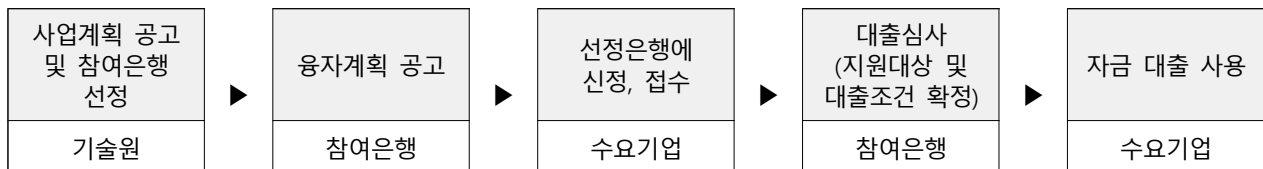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획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정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 대출 시 우대금리 이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업체 등 다량 배출 기업
- (지원범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발생 저감설비 신증설을 위한 자금 금융기관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및 일부 이차보전 지원
- (지원기간 및 우대금리) 참여 은행 및 기업별 대출심사 결과에 따름
- (지원규모) 시중 민간자금 총 5조원 규모 이내

□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선정된 참여 은행의 전국 각 영업점을 통하여 신청, 접수
※ 2월 중 참여 은행 선정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참여은행의 구비서류 기준에 따름
- (처리절차)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금융지원실, 전화: 02-2284-1731~5, 1740, 1741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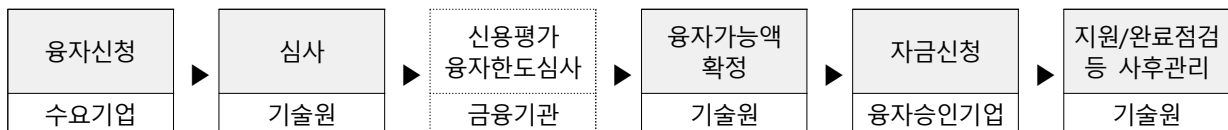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이 가능한 시설·설비 개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능한 설비와 부대장치 비용
- (지원분야)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
- (지원기간) 시설자금 10년 (변동금리, '22년 1분기 1.82%)
- (지원금) 총 500억원(사업자별 최대 80억원, 최소 10백만원)

□ 선정 및 평가 절차

- (절차) 정책자금 융자지원 절차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2년 1월 28일 ~ 계속
- (접수기간) 2022년 2월 14일 09:00 ~ 2월 18일 18:00 (월단위 접수 시행)
※ 3월 이후 접수 일정은 사전 공지 안내(환경정책자금융자지원시스템 등)
- (신청방법)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http://loan.keiti.re.kr>)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등록
※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처 금융지원실, 전화: 02-2284-1731~5, 1740, 1741

작 성 자

- 투자종합상담실 환경부 파견관 고혜진

KOTRA자료 22-052

외국인투자 관련 환경정책동향

2022년 1분기

발 행 인 | 유 정 열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2년 4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투자종합상담실
(02-3497-1738)
I S B N | 979-11-402-0276-8 (95320)



Copyright © 202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